

September 23,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9. 9.~9. 20.)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단축(現 4주 → 2주內)하고, 통관 前 공장 내 보관 허용(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산자부 1]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참고자료\) 무역정책과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



① 글로벌 R&D,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약 2.7조원 지원(~'22), ② 시장 다변화·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 약 3.7조원 추가 지원('20), ③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마케팅 등 '20년 526억원 투입('19년 대비 151억원 증액), ④ 22년까지 신남방·중남미 등과 FTA 10건 이상 추가 타결('19. 현재 15건 발효)

[산자부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참고자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

[과기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참고자료\)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① '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1조 원+α 추가 공급, ② 5세대 이동통신기반 실감 콘텐츠에 선제적 투자, 실감형 문화관광 프로젝트도 추진, ③ 콘텐츠 해외진출 핵심요소 지원 및 화장품·식품·관광 등 한류 연계산업 마케팅 강화

[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심사 강화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개정

고시 [\(참고자료\)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보도자료](#)



지난 5월 허가사항과 주성분 세포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인보사케이주'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 심사 시 세포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① 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결과 제출, ②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용제의 성분, 규격 및 용기의 규격 기재 ③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자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 10. 21.까지 입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8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에서 주민과 어업인 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해양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민사적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거나 약관법을 위배한 불공정한 약관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함. 하지만,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각 안 제5조의1, 안 제6조의2, 안 제11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최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하수급인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에 따라 시내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세물품에 한하여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이 항공 탑승권을 구입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한 후 항공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장인도 받은 면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시킴으로써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의2 신설 및 제277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법인의 특성상 참여하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 전략적 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 판교 · 베이징 · 상해 · 호치민 · 하노이